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10937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전유철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성

변론 종결 2019. 1. 8.

판결 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269,733원 및 이 중 197,843,420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8.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7.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7. 12. 7. 접수 제567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와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4. 4. 25. 각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에 대하여 ① 채권자 소외 은행, 신용보증원금 15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25. ~ 2015. 4. 24.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및 ② 채권자 소외 은행, 신용보증원금 6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25. ~ 2015. 4. 24.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 소외 은행에 대한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D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구상채무자들은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구상권의 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비용 등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인 소외 은행에게 부담하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에 대하여 2018. 2. 7.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소외 은행이 2018. 3.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면서 신용보증금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4. 20.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금으로 197,843,420원(= 제1신용보증 대위변제금 145,347,982원 + 제2신용보증 대위변제금 52,495,43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그에 따른 구상채권의 보전조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426,313원의 대지급금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인 피고 B는, 2017. 10. 31.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673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갑 제1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채무금 198,269,733원 및 이 중 보증채무이행 원금 197,843,420원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일인 2018.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8.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구상채권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여만인 2018. 2. 7.경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8. 4. 20. 원고의 신용보증금 지급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피고 B의 사해의사 앞서 든 각 증거 및 사실관계,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E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또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겸 증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가 2004. 1. 28.경 전원주택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 및 27명이 공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예정단지의 도로예정지(별지 목록 2~24번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로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필지와 마찬가지로인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사실, ③ 피고 B와 피고 C의 남편(F)은 오래된 지인관계로서, 피고 C은 2008년경부터 2015년까지 피고 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2015. 8. 19. 당시 대여금이 121,000,00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 C이 2016년 초경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피고 B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2016. 4. 20.자로 25,000,000원밖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 ④ 이후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96,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들어가는 취득등록세 등의 비용 6,000,000원을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한 것인 사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은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본인이 주채무자인 채무는 약 133,000,000원, 적극재산으로는 추정 교환가치가 약 104,3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⑥ 피고 회사의 부도로 피고 B가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포함하여 약 630,224,000원 이상으로서 피고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자금난을 겪어 왔는바,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운용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 C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드러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상근

별지